

의안번호	2215775
의 퇴 인	모경종의원
회 답 일	2026. 3. 30.
추 계 번호	25D7398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2억 2,600만원, 2032년 13억 2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3억 7,900만원(연평균 12억 7,6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(안 제27조의2 신설)	1,226	1,250	1,275	1,301	1,327	6,379	1,276

- 주: 1. 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(안 제27조의2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,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사업을 활용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2(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)	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7조의3(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등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7조의5(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)	시·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2(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)	O	-
2	안 제27조의3(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등)	X	발급수수료 수입 여부,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 발급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27조의5(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)	X	발급수수료 수입 여부, 운행정지 표지 발급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한 승강기의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정·개정, 연구·조사, 정책 및 선진화 연구, DB 구축, 해석 및 보급 등을 목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‘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 기준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0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설치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사업을 참고하면,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6년 기준 11억 7,800만원 예산 편성
 - －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사업이 있으며, 표준품셈 관련 사업 이외에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개정, 스마트건설 원가기준이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승강기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의 유사사례로 보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음
 - 유사사례를 활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 12억 2,600만원, 2032년 13억 2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3억 7,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설치공사비 산정기준 조사·연구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설치공사비 산정기준	1,226	1,250	1,275	1,301	1,327	6,379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사업을 활용하고,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